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04 발의연월일: 2022. 2. 8.

발 의 자:서영석·강선우·김민철

김성주・김수흥・남인순

문진석 · 오영환 · 이용빈

조승래 · 허종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,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 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 고,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"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"을 "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, 보건복지부령으로

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"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졸업한 사람"을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전공한 사람"을 "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면허) ① 의료기사등이 되	제4조(면허) ①
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	
기사등의 국가시험(이하 "국가	
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한 후	
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	
야 한다.	<u>.</u>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	1
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	
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에	
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	
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	
전공하고 <u>졸업한 사람</u> . 다만,	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</u>
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	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	여 졸업한 사람
따른 인정기관(이하 "인정기	
관"이라 한다)의 보건의료정	
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	
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	
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	
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	
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	
한다.	

- 2. ~ 4. (생 략)
-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. 다만,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 다.
- 1. 의료기사·안경사: 대학등에 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
- 2. (생략)
- ③ (생 략)

2. ~ 4.	(현행과	같음)	
②			
1			
<u>전공하</u>	고 보	건복지-	부령으로
<u>정하는</u>	현장실	습과목	을 이수
한 사람	<u>}</u>		
2. (현행	과 같음))	
③ (현행	과 같음)	